이 예시는 가상의 사안입니다. 인물, 날짜, 장소, 회사 및 금액은 모두 가상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소장(사기)

고 소 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구 ○○로 ○○, ○○○호(○○동)
전화번호 010-○○○○-○○○○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불상(최후 주소 경기 ○○시 ○○로 ○○)
전화번호 010-○○○○-○○○○
기타 고소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2026. 5. 1.부터 고소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있음

죄　　명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설명]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불상'이라고 기재하고, 고소인이 아는 최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소인은 2026. 2. 10. 14:00경 서울 ○○구 ○○로에 있는 ○○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 주식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 다음 달 말에 들어온다. 그때까지만 돈을 빌려주면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그 회사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2026. 3. 4. 고소인에게 전화로 "대금 지급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데, 납품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설명]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및 재물의 교부가 차례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그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 고소인이 무엇을 교부하였는지를 차례로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서울 ○○구에 거주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25. 12.경 동창 모임에서 다시 연락하게 된 사람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첫 번째 차용(2026. 2. 10.)

피고소인은 2026. 2. 10. 14:00경 서울 ○○구 ○○로에 있는 ○○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 주식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 다음 달 말에 들어오니 그때까지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1호증 계좌이체 확인증), 피고소인은 변제기를 2026. 3. 31.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차용증).

나. 두 번째 차용(2026. 3. 4.)

피고소인은 2026. 3. 4.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대금 지급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데 납품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3호증 계좌이체 확인증), 피고소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두 차용금의 변제기를 2026. 4. 30.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증 제4호증의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다. 변제기 이후의 경과(2026. 4. 30.부터 2026. 5. 12.까지)

피고소인은 2026. 4. 30.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26. 5. 1.부터 고소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26. 5. 7. ○○ 주식회사에 피고소인과의 거래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회사의 담당자는 2026. 5. 8.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운영한다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이후 피고소인은 2026. 5. 12.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솔직히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막았다.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라고 보냈습니다(증 제4호증의 2 카카오톡 대화 캡처).

한편 고소인은 2026. 5. 중순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공통 지인인 ○○○으로부터, 피고소인이 2026. 초경 다른 동창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인이 전해 들은 것이므로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경위는 날짜별로 소제목을 나누고, 사실마다 문장 끝 괄호에 증거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단정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단정하여 기재하면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설명]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므로, 그 판단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요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소인은

① 2026. 2. 10. ○○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는데도 그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고소인을 속여 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② 2026. 3. 4. 납품을 마무리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다시 고소인을 속여 1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증 제3호증),

③ 그 돈을 납품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증 제4호

증의 2).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 재원으로 내세운 납품대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증 제5호증), 그 납품의 당사자인 피고소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약속한 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할 재원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설명] 위 판결이 제시한 객관적 사정(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차용금의 사용처)에 맞추어 이 사건의 사실을 ①부터 ③까지 정리하고, 각 사실 끝에 증거 번호를 다시 기재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예상 변명에 대한 반박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피고소인이 변제의 재원으로 내세운 납품대금은 차용 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이는 차용 뒤의 사정 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다릅니다.

2) 피고소인은 2026. 5. 12.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증 제4호증의 2). 만일 피고소인이 납품을 마무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였다면 굳이 그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26. 5. 1.부터 고소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설령 피고소인에게 언젠가 차용금을 갚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재원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린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명] 차용금 사기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변명이 예상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먼저 답하였습니다.

5. 수사 요망 사항

① 피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의 2026. 2. 10.부터 2026. 5. 31.까지의 거래내역(차용금의 사용처)의 확인,

② ○○ 주식회사와 피고소인 사이의 납품 거래 존재 여부의 확인,

③ 2026. 2. 당시 피고소인의 채무와 재산 상태 및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린 다른 피해

자가 있는지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설명] 고소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금융거래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③은 2. 다.에서 전해 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6. 결어

피고소인은 오랜 동창이라는 고소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납품대금을 내세워 두 차례에 걸쳐 3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증 제1호증	계좌이체 확인증(2026. 2. 10.)
1. 증 제2호증	차용증
1. 증 제3호증	계좌이체 확인증(2026. 3. 4.)
1. 증 제4호증의 1, 2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주식회사 담당자)

참고자료

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②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한 때에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6. 15.

고소인 ○○○ (인)

○○경찰서장 귀중

[설명]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신을 경찰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